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71호

2023. 3. 13. (월)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321호 삼척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안(발령) ————— 2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3월 13일

삼척시장박상수

삼척시 훈령 제321호

삼척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삼척시청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삼척시청(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및 도급·용역·위탁사업의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이란 시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현장을 말한다.
2.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시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3.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2호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4.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산안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갖춘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

런 예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는 동시에, 시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 관리조직) ① 시장은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지원 등 총괄·관리를 위하여 중처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② 시청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한다.)로 선임하고, 시장은 사업별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

③ 제1항, 제2항 및 본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청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력·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산안법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시장은 수급인 및 산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시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로 한다.)로 지정한다.

②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산안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각 부서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며, 부서의 장은 사업별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산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산업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관리자의 수는 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산업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건관리자의 수는 산안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한다.

제13조(산업보건역)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의 선임이나 위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산업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근로자대표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시는 명예감독관으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작업지휘자의 배치)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게차,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한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다리(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다리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다리의 최대 지간길이가 30미터 이상인 다리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산안법 제2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산안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각 10명 이내로 구성·위촉한다.

1. 근로자 위원

가. 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또는 명예감독관

2. 사용자 위원

가. 사용자 대표: 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사용자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임시회의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때는 재투표를 하며, 재투표 후에도 동수인 경우에는 양측 대표 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종사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건 논의 등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활동보장 및 신분보장·해촉) ①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위원이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이동한 시간 및 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3. 근로자 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내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의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을 3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1조(회의 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게시관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2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다.

제23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시장은 시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정기교육
- 2. 채용 시 교육
-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4. 특별교육
-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에 의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교육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른다.

④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직무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안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교육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교육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제22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① 시장은 산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배치 전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교육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제23조에 따른 채용 및 작업 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안전보건교육 강사)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교육결과 기록·보존) ① 시장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 및 내용

3. 교육담당자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29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 및 사업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관리감독자는 산안법 제8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1. 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31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로서 산안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안전보건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33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작업중지) ① 시장 및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등은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안전점검) ①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상태나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36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장소·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또는 그 밖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 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 배분 및 공정관리 적정 여부
4. 작업 용구, 작업 장구 및 안전 장구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39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 건강진단

5. 임시 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제2호에서 제5호까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작업환경측정) ① 시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1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 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노동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시 안전보건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4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경고표시) ① 시장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해당 작업장 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3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그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

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를 받고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시청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46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장 및 관리감독

자는 산안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에 따른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관련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다.

제48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7장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

제49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장은 산안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하는 사업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의무 확보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및 순회 점검 실시
3.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50조(도급사업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

② 시장 및 관리감독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수급인 등에 대한 시정조치)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대표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8장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2조(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등)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해당 관리감독자 및 시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발생 상태 그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발생 보고) ①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에 따라 사고조사를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시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시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5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① 관리감독자는 발생한 산업

재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5조(산업재해 기록·관리)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제9장 위험성평가

제5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실시 시기에 의거 최초평가, 수시평가 및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③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5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적인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험성평가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58조(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9조(위험성평가 기록·보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10장 보칙

제60조(무재해 운동)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제61조(제안창구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62조(포상 및 징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업무 처리에 우수한 부서, 근로자 또는 대외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종사자
- 2. 우수한 안전, 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하게 우수한 부서 또는 종사자

4. 우리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하게 우수한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 등

② 포상 기준 및 절차 등은 「삼척시 포상 조례」에 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성적이 불량한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1. 산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제63조(안전·보건 문서 기록·보존) 시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을 산안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규정 작성·변경 절차)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제65조(규정 준수 등) ① 시장 및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관리감독자는 이 규정을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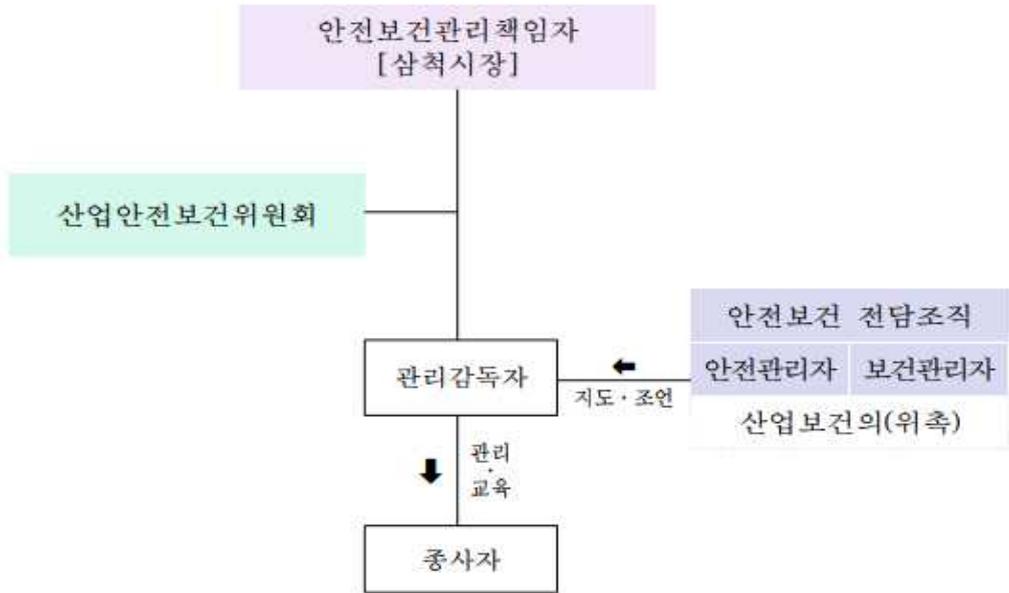
③ 이 규정은 시청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안전보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안법, 중처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삼척시 안전·보건 관리 조직표



☞ 관리감독자 : 부서장 및 부서장이 지정한 자